

제286회 정례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412 호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제 출 일 : 2021. 11. 10.
- 회 부 일 : 2021. 11. 17.

2. 제안이유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자치구로 이양되는 사무 중 구에서 보건소로 재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하고,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 사무에서 누락된 사무를 신설하며,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근거법령 및 사무명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별표, 1호)

주요내용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 삭제	(2021.1.13.시행)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 ¹⁾

1)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나.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업무 신설

주요내용	근거법령
20.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략-----	- [시행 2021.1.1.] 지방일괄이양법 제43조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 ²⁾

다.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에서 누락된 사무 신설

주요내용	근거법령
16.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략-----	[시행 2011.6.7.] [법률 제10788호] 의약품법 제45조제1항 ³⁾
17.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략-----	[시행 2016.3.30.] [법률 제13655호] 약사법 제47조 ⁴⁾
1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략-----	[시행 2012.11.15.] [법률 제11421호] 약사법 제44조의2 ⁵⁾ 신설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략-----	[시행 2012.6.8.] [법률 제10786호] 약사법 제48조 ⁶⁾ , 제49조 ⁷⁾
21. 특수의료장비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략-----	[시행 2010.3.19.] [법률 제9932호] 의료법 제38조 ⁸⁾

2) 시행 2021.1.1. [법률 제17007호],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여야한다.” 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로 변경

3) 시·도지사에서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5)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①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6) 제48조(마약류 감시원) 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

라.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주요내용	근거법령
2.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에 관한 사무	[시행 2013.6.12.] [법률 제11878호]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⁹⁾
10. 치과기공시설의 인정·인정취소 및 업무정지	[시행 2011.10.31.] [보건복지부령 제82호]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 삭제
18. 기생충예방을 위한 수거 검사	[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¹⁰⁾

마. 착오 기재된 내용 수정

주요내용	수입기관(근거법령)
1.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가. 7급 이하(6급 무보직 평주사 포함) 지방공무원의 소 내 전보 ¹¹⁾	보건소장
2.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나. 정기예방접종·임시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¹²⁾

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 감시원을 둔다

7) 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마약류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8)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절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9) 제8조(의료급여증) ③ 수급권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의료급여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면서 “기생충예방을 위한 수거 검사 부분” 부분 삭제

11) 비교표에는, “다. 7급이라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 내 전보”라 잘못 기재

사.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 정비

아.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 103조 및 제117조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제43조(「의료기기법」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제1항 본문·제5항 및 제6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제33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은 “으로 한다.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 대하여는 “을 ”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12)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수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2021. 9. 30. ~ 2021. 10. 20.

라. 비용추계 :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정비와 ②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의 신설 ③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에서 누락된 사무의 신설 ④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의 정비와 위임사무의 삭제 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

다만,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이미 오래 전에 자치구의 권한 사무로 전환된 사무가 누락되어 새로 신설되는 사례가 많아, 평상시에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구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의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